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규정 제2022-003호][시행 2022. 9. 1.][일부개정 2022. 9. 1.]

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4년	12월	3일
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7년	12월	11일
개정	2019년	8월	2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개정	2021년	6월	29일
개정	2021년	12월	2일
개정	2022년	9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이하 “운용요강”이라 한다) 제6장제2절에 따른 공제자산의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제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정관 및 운용요강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적 자산배분”이라 함은 중장기 자산운용 기조에 관한 투자정책을 반영한 자산배분을 말한다.
2. “전술적 자산배분”이라 함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부터 주어진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목표수익률”이라 함은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4. “허용위험한도”라 함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손실의 정도를 말한다.
5. “거래기관”이라 함은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 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장외파생금융상품 및 예금 등의 거래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직접운용”이라 함은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본회 자산운용 담당 임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탁운용”이라 함은 공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외부 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대체투자”라 함은 국내외 부동산·SOC·인수금융·PEF 등의 투자 및 주식·채권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해서는 기타 법령, 관련 제규정 및 시장 관행의 순에 의한다.

제4조(윤리준칙) 임직원은 공제자산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공제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 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제자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⑤ 임직원은 「복무규정」 등 중앙회 제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운용요강 제46조에 따라 공제자산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자산운용위원회
 2. 대체투자위원회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 ③ 삭제 <2021. 12. 2>
- ④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임직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 한 경우에는 중앙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안을 유지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투자 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 <2021. 12. 2>
- ⑦ 위원회의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비대면 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8>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은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기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의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이해관계 정도를 고려 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의견이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와의 계약 해지, 선정 취소, 거래 제한 또는 위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①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공제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재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 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 <개정 2021. 12. 2> <개정 2022. 9. 1>

- 1. 삭제 <2019. 8. 2> 중앙회 자산운용 담당임원 <신설 2022. 9. 1>
- 2. 중소기업부 담당 과장
-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개정 2021. 12. 2>
- ②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운용요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간 및 분기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8>
 - 3.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 4. 자산운용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 5.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으로서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 ③ 삭제 <2022. 9. 1>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회 리스크관리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자산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2. 2>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① 대체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자산운용 담당임 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재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 <개정 2021. 12. 2> <개정 2022. 9. 1>

- 1. 삭제 <2017. 2. 6>
- 2. 중앙회 자산운용 담당 임원 <신설 2021. 12. 2>
- 3.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풀(Pool) 중 3인 이상 6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개정 2017. 2. 6> <호변변경, 개정 2021. 12. 2>
- ② 대체투자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 등 각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들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 풀(Pool)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1. 12. 2>

③ 대체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체투자 정책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단, 부동산 직접 취득의 경우 위원회 심의 후 공제운영위원회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4. 투자 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회 리스크관리 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기타 대체투자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 ⑧ 대체투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2. 2> <개정 2022.9.1>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자산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배분

제10조(자산배분의 원칙) 중앙회는 공제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 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제11조(전략적 자산배분) ① 중장기 및 연간 자산배분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 자산종류별 목표 투자비중을 기준

으로 비중 조정 허용범위를 설정한다.

제12조(전술적 자산배분) 중앙회는 공제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자산종류별 투자 비중을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산운용계획의 수립) ① 중앙회는 운용요강 제45조의 자산운용계획에 의한 당해연도의 연간 및 분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운용전략 <개정 2020. 12. 8>
3. 전략적 자산배분 <개정 2020. 12. 8>
4. 위탁운용계획 <개정 2020. 12. 8>
5. 자산종류별 벤치마크지수 및 목표수익률
6. 허용위험한도 등 <개정 2020. 12. 8>

③ 제1항에 따른 분기 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전술적 자산배분 <개정 2020. 12. 8>
3. 자산종류별 운용계획
4. 제2항에 따른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이행 실적 등 <개정 2020. 12. 8>

제13조의2(자산운용지침) ① 중앙회는 자산운용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라 한다)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공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 3. 리스크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자산운용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제14조(목표수익률) ① 목표수익률은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종류별로 설정한다.
 ② 자산종류별 목표수익률은 공제 자산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제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확정된다.

제15조(허용위험한도) 허용위험한도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또는 원금 등 합리적인 지표보다 하회하지 않을 확률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5장 자산운용 방법

제1절 자산운용 일반

제16조(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정책) ① 공제자산 운용은 운용요강 제43조에 따라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에 의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직접 및 위탁운용의 규모는 운용 인프라 및 공제자금의 성격, 리스크 분산 효과, 운용기법, 운용수익·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 또는 대체투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운용 분류) 공제자산 운용은 자산군별로 단기자금,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며 운용방식, 통화기준 등에 따라 다음의 각 호로 분류한다.

- 1. 채권 : 국내채권, 해외채권
- 2. 주식 : 국내주식, 해외주식
- 3. 대체투자 : 단기자금, 채권, 주식 등 전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투자 <개정 2020. 12. 8>

제18조(투자대상) 운용요강 제43조제1항의 예치금 또는 금전신탁, 금융투자상품의 대상기관 및 투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예치금 또는 금전신탁 대상 금융기관
 -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단,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거래약관상 본점보증면책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 및 동법 제9조제17항제3호의 증권금융회사
- 2.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제19조(운용 제한) ① 공제자산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외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 2. 파생상품의 경우 헤지거래와 차익거래를 제외한 투기적 거래
- 3. 기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 ② 다음 각 호의 종목은 공제자산의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부도, 회생절차, 상장폐지, 자본잠식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 2. 관리대상종목, 투자유의 지정종목

제20조(거래기관의 선정 및 관리) ① 거래기관은 거래의 안정성, 수익성, 거래 상품의 특수성, 정보 제공 등 자산운용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② 거래기관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거래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본회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2. 거래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거래기관이 본회 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회의 명성 또는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21조(외부기관의 활용) ① 중앙회는 자산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위탁 운용사의 후보 구성과 선정 등 공제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중앙회는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 사무관리 및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 사무관리회사 및 주거래은행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제2절 채권 직접운용

제22조(운용원칙) ① 채권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종류별, 발행자별, 만기구조별 등의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절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대상) 채권의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및 제5호의 파생결합증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제24조(투자 신용등급 및 한도) 투자대상의 신용등급 및 투자한도는 「리스크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25조(단기자금의 운용) ① 단기자금은 안전성 및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 및 자금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회수할 경우의 투자회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 ② 단기자금은 제17조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취급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 ③ 단기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교체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제3절 주식 직접운용

제26조(운용원칙) 주식운용은 공제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투자를 지향하되,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을 최대한 증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7조(주식투자종목군 구성) ① 주식운용은 사전에 자산운용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아 투자가능종목군을 구성하고, 구성 종목군에 포함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한다. <개정 2019. 8. 2>

② 주식투자종목군의 신규 편입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에서 논의 후 자산운용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개정 2022. 9. 1>

③ 투자가능종목에서 제외된 종목 중 기 투자된 종목은 투자가능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추가매수는 제한한다.

④ 위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투자채권의 출자전환

으로 취득한 주식은 보유할 수 있으나 추가매수는 제한한다.

제28조(권리행사) 주식운용의 결과로써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1. 의결권
2. 유상증자의 참여
3. 매수청구권
4. 신주인수권
5. 그 밖에 부여된 권리 등

제4절 대체투자

제29조(운용원칙) ① 대체투자는 투자자산의 다양성, 투자의 비정형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및 유동성의 부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안전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평가이익의 실현
2. 투자의 만기분산
3.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③ 대체투자는 세부적인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의 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투자범위) 대체투자의 투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동산
2.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3. 사모투자
4. 기업구조조정투자
5. 벤처투자

6. 자원개발
7. 인수금융
8. 기타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투자대상

제31조(권리행사) 대체투자의 결과로써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1. 의결권
2. 유상증자의 참여
3. 매수청구권
4. 신주인수권
5. 그 밖에 부여된 권리 등

제5절 위탁운용

제32조(운용원칙) ① 위탁운용은 자산운용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되어야 한다.
- ④ 대체투자 위탁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운용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7. 2. 6>

제33조(위탁운용사의 선정) ① 위탁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② 위탁운용사 선정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종합적 평가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경영 및 재무안정성
 2. 조직 및 인력

- 3. 운용프로세스
 - 4. 운용계획 및 운용전략
 - 5. 위험관리 체계 및 컴플라이언스
 - 6. 운용실적
 - 7. 수수료 등 가격평가
 - 8.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성적 평가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고려할 수 있다.
- ④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대체투자위원회가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면서 그 투자대상의 운용에 관하여 위탁하는 상대방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일괄방식 :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 다수의 후보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2. 건별방식 :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후보 하나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식
 3. 그 밖에 공제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방식
- ⑤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안서심사
 2. 구술심사
 3. 최종 선정
- ⑥ 위탁운용기관 선정시 판매사를 둘 수 있으며 판매사 선정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제34조(위탁운용사의 관리)** ①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2. 포트폴리오 내역
 3. 계약내용 준수 여부
 4. 담당운용인력 변동사항 등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등

-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운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관리내역을 정기적으로 자산운용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회는 기본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운용 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 회사, 채권평가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그 밖의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해외금융자산 운용

- 제36조(운용분류)** ① 해외금융자산은 자산군별로 해외채권, 해외주식으로 나누어 분류하며 운용방식 등에 따라 다음의 각 호로 분류한다.
1. 해외채권 : 직접운용, 위탁운용
 2. 해외주식 : 직접운용, 위탁운용
- ② 제1항의 해외금융자산은 투자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하위 유형을 둘 수 있으며, 하위 유형은 투자전략과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다.
- 제37조(운용원칙)** ① 해외금융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수익성, 유동성, 위험수준,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운용한다.
- ② 해외금융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분산효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선정 및 관리는 제5장제5절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 제38조(요령)**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4. 2.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8>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